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요령

1. 조합 일괄 신고

- 카드매출기준 연간 3,000만원미만자
- 2019년 인가자는 월평균 매출 250만원 미만자

2. 본인 직접신고 대상자

- 카드매출기준 연간 3,000만원이상자
- 2019년 인가자는 월평균 매출 250만원 이상자
- 휴직신고자, 사업자등록번호 미신고자, 오류등록자, 폐업자
- 본인이 직접신고 신청자
- 일반과세대상자

3. 본인 직접신고대상자 세무신고 방법

1)신고자료 준비

①매출자료 : 카드매출(이비,티머니,kcp확인)

②매입자료 : LPG충전금액,차량정비,오일교환,네비및블랙박스구입,민자고속도로통행료
(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건만 가능)

2)부가가치세 세액 산출(간이과세자 기준)

①매출액 × 2%

ex)매출액 30,000,000원 × 2% = 600,000원

②매입액 × 2%

ex)매입액 10,000,000원 × 2% = 200,000원

③세액공제

ex)카드매출 30,000,000원 × 1.3% = 390,000원

납부부가세=매출세액 600,000 - 매입세액 200,000원 - 세액공제 390,000
=10,000원

주의사항 : 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신용카드매출금액란 꼭 기재할 것.
미기재시 세액공제 못 받을 수 있음.

4, 조합 자문회계사 : 박동철 회계사(전화 : 070-8804-1444)
출장일 : 1월 14일~17일(오전 9시30~12시30)
협약 수수료 : 20.000원

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요령

1. 일반과세자 기준금액
   - ▸연간 매출 48,000,000원 이상자
   - ▸2019년 인가자는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상자

2. 일반과세자 전환시기
   - ▸전년 매출기준 48,000,000원이상자는 매년 7월 국세청으로부터 전환 통보 받으며 이때 당해연도 1월~6월 매출을 7월25일까지 신고
   - ▸1월 신고시는 간이과세자 기준세율 적용되어 세액 산출됨(2%)
   - ▸7월 신고시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세율 적용되어 세액 산출됨(2%)
   - ▸후년 1월 신고분부터(일반과세 적용 10%) - 7월~12월 매출신고

※전년 연간 매출이 48,000,000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
(세무서에 전환 신고하여야 적용되며 적용시점은 7월임)

※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7월이므로 7월달 신고하여야함(1월~6월 매출)
-이때 일반과세율 적용되어 10%임

2. 부가가치세 신고요령

1)신고자료 준비

①매출자료 : 카드매출(이비,티머니,kcp확인)

②매입자료 : LPG충전금액,차량정비,오일교환,네비및블랙박스구입,
민자고속도로통행료(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건만 가능)

주의사항 : 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신용카드매출금액란 꼭 기재할 것.
미기재시 세액공제 못 받을 수 있음.